

화상공증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남 상 우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

전자공증이 시행된 지 어언 8년이 지났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전자공증이지만, 지금까지는 그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전자공증이라는 이름이 주는 선입감과 달리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으면 전자공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주로 지적되었다. 지난 해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올 6월부터는 공증인이 촉탁인 등을 화상을 통해서 대면하여 그 사람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촉탁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공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른바 화상공증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전자문서가 등장하면서 그에 대한 인증방법인 전자공증의 도입은 세계적인 입법추세이다. 그러나 우리처럼 화상공증까지 인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화상공증은 지난 9월 중국 시안에서 열린 국제공증인협회 아시아 지역위원회(CAAs)에서도 각국 공증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다가올 진정한 페이퍼리스 사회에서는 중요한 계약서조차도 당연히 전자문서

로 작성될 것이다. 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공증한다면 필연적으로 전자공증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전자 공증문서는 종이 공증문서보다 보존·관리가 매우 간편하다. 또한 전자 공증문서는 종이 공증문서와 달리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보존할 수 있다.

제도 도입의 이유가 되고 있는 촉탁인 등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공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 외에도 화상공증은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가 확인되도록 설계됨으로써 위·변조된 신분증에 의하여 잘못 공증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장점도 있다. 더구나 촉탁인 등의 신분 확인과 촉탁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모두 녹음·녹화된다. 공증인의 업무처리가 그만큼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흔히 화상을 통해서만 촉탁인 등의 신원과 촉탁 의사의 확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직접 화상공증을 해 본 공증인들에 의하면 직접 대면하는 경우보다 결코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신분증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되는 것은 진일보한 점이다. 화상공증은 단지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획기적인 제도인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진 화상공증 건수는 6월 4건, 7월 17건, 8월 21건, 9월 30건, 10월 19건이다. 애초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이다. 앞으로 외교부가 준비 중인 전자 아포스티유 제도가 시행된다면 화상공증을 포함한 전자공증의 이용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여권에 의한 신원 확인 방법이 가능하게 된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해외 교포들도 화상공증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화상공증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시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개선하여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화상공증 시행 초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인터넷 환경이나 전자적 거래 등에 익숙한 사람도 어려움을 겪곤 한다. 화상공증을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하고 종이공증을 받는 경우를 심심찮게 들린다. 아직은 개선될 사항이 많다는 것의 방증이다.

시스템의 개선과 더불어 화상공증의 장점에 관한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고 편리한 제도일지라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널리 이용될 수 없다. 이미 전자공증을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사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현재 전자공증 사례의 상당수는 특정 대기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대기업에서는 협력회사에 제공하고 금형을 관리하기 위하여 협력회사로 하여금 보관증을 공증해서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던 중 우연히 전자공증 제도를 접하게 된 것을 계기로 협력회사로 하여금 전자공증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게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제출된 공증문서를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는, 국가기관이나 경제단체 또는 전문직 단체 혹은 대기업 등을 상대로 화상공증의 장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다들 페이퍼리스 사회의 도래를 이야기하지만, 앞으로도 종이 공증문서는 상당 기간 살아 남아 있을 것이고, 당분간은 전자 공증문서보다도 훨씬 더 폭넓게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리 전자공증이 편리한 점이 많다고 해도 종이 공증문서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나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뀌기 힘들다. 종이 공증문서에 익숙한 사람이나 문화와 전자 공증문서에 익숙한 사람이나 문화가 한동안 함께한다고 할 때 양자의 공존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즉 전자공증을 받았더라도 종이 공증문서를 선호하는 쪽을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하고, 역으로 종이공증

을 받았더라도 전자 공증문서를 선호하는 쪽을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전자는 현행 공증인법에서도 이미 강구되어 있다. 인증한 전자문서 등의 보관 청구가 있는 경우에 촉탁인은 언제든지 보관된 「전자문서 등과 동일한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법제66조의9제1항제2호), 그 경우 공증인은 그 정보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공할 수도 있지만 전자문서 등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법제66조의9제2항). 여기서 전자문서 등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이란 결국 전자문서 등과 동일한 정보에 관한 종이 증명서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종이 공증문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 등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공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는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일반적으로 공증인이 인증정보의 제공 청구자를 공증인이 직접 대면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제15조 참조), 실제로 전자공증시스템도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자가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문서 등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전자공증시스템도 그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문서 등의 정보를 증명하는 서면 제공 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이에 따라 당연히 그 서면을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과 그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해서도 정하여야 한다.

후자는 법리적인 문제를 차치하면 종이 공증문서를 대상으로 한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화상공증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일단 종이 문서로 공증을 받은 다음, 그것을 대상으로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을 받아서 그것을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증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하고 공문서를 대상으로 한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은 공증인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증인은 자신이 작성한 인증서에 한하여 비록 공문서일지라도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작성한 인증서에 대하여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을 허용한다면 그에 대한 인증수수료는 등본 수수료 정도로 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종이 공증문서에 대한 수수료에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수수료까지 보태어 부담하게 하면 촉탁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은 실질적으로 대상문서에 대한 등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화상공증의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홍보를 강화하거나 시스템을 정비하고 또한 종이 공증문서 형식이든 전자 공증문서 형식이든 촉탁인이 필요하면 동시에 또는 사후에 다른 형식에 의한 공증문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공증인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증인 중 상당수가 화상공증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걸림돌이다. 공증인들을 상대로 한 화상공증에 관한 교육과 계도가 절실한 이유이다. 이는 법무부와 협회가 나서야 할 몫이겠지만, 화상공증을 수용하려는 자세는 전적으로 공증인들의 몫이다. 바야흐로 공증인들에게 화상공증에 관한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때이다. 